

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1. 6.] [총리령 제1651호, 2020. 10. 16., 일부개정]

【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·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● 총리령 제1651호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0월 16일

국무총리 (인)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 중 "위생모"를 "위생모 및 마스크"로 한다.

별표 17 제7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식품접객영업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)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.

별표 27 제1호라목 중 "위생모"를 "위생모 및 마스크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